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해외 위탁 운용 역 변경	모펀드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	투자 대상 자산 추가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환매 수수 료	가입 자격	결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-	○	-	-	-	-	-	11)
2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, 주 3)	-	주 2), 주 3)	-	-	-	-	-
3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, 주 3)	○	주 2), 주 3)	-	-	-	-	11)
4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, 주 3)	○	주 2), 주 3)	-	-	-	-	11)
5	미래에셋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	○	주 1)	-	-	-	-	11)
6	미래에셋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	○	주 1)	-	-	-	-	-
7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	○	주 1)	-	-	-	-	11)
8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-	주 1)	○	주 1)	-	-	○	○	11)
9	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	○	주 2)	-	-	-	-	11)
10	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, 주 3)	○	주 2), 주 3)	-	-	-	-	11)
11	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○	주 3)	-	-	-	-	9), 10), 11)
12	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-	주 3)	○	주 3)	-	-	-	-	11)
13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, 주 2), 주 3)	○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14	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	-	주 2)	-	-	-	-	11)
15	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○	주 3)	-	-	-	-	11)
16	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○	주 3)	-	-	-	-	11)
17	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2), 주 3)	○	주 2), 주 3)	-	-	-	-	-

18	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2), 주 3)	○	주 2), 주 3)	-	-	-	-	11)
19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0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1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2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3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4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5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-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6	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	○	주 1)	-	-	-	-	-
27	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주 3)	-	주 3)	-	-	-	-	-
28	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, 주 2), 주 3)	○	주 1), 주 2), 주 3)	-	-	-	-	-
29	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	-	-	○	-	-	○	-	-	11)
30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-
31	미래에셋개인솔로몬 MMF1 호	-	-	-	-	-	-	○	○	11)
32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11)
33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9), 10), 11)
34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○	-	-	-	○	○	9), 10), 11)
35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○	-	-	-	○	○	11)
36	미래에셋베트남 & 차이나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9), 10), 11)
37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11)

38	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9), 10), 11)
39	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-
40	미래에셋이머징달리회사채증권투자자신탁 1 호(UH)(채권)	-	-	-	-	-	-	○	○	11)
41	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-	-	주 4)	-	-	-	-	-
42	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9), 10), 11)
43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K-3 호(주식)	-	-	○	-	○	-	○	○	9), 10), 11)
44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-	-	-	-	○	○	-
45	미래에셋중국위안화우량채권증권투자자신탁(채권)	-	-	-	-	-	-	○	-	11)
46	미래에셋차이나 A 레버리지 1.5 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○	-	-	-	○	○	11)
47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자신탁 2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11)
48	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-	○	-	-
49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-	○	-	-
50	미래에셋코친디아포커스 7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-
51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9), 10), 11)
52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-	-	○	-	-	-	○	○	11)
53	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-	○	○	11)

2. 변경 사항:

- 1)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- 6) 환매수수료 삭제
- 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10) 법 개정사항 반영
- 11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4월 28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다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	<u>Malcolm Dorson</u>	<삭제>

2) 모투자신탁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

주1)
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다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	<u>Malcolm Dorson</u>	<p>※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으로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서 기재하였습니다.</p> <p>※ 운용팀에 관한 사항</p> <p>- 운용조직 명 : <u>Equity Investment Team</u></p> <p>- 운용조직 역할 : <u>Equity Investment Team</u>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/p>

주2)
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다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	<u>Malcolm Dorson</u>	<p>※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으로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서 기재하였습니다.</p> <p>※ 운용팀에 관한 사항</p> <p>- 운용조직 명 : <u>Equity Investment Team</u></p> <p>- 운용조직 역할 : <u>Equity Investment Team</u>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</p>

고 있습니다.

주3)
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다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	<u>Malcolm Dorson</u>	<p>※ <u>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.</u></p> <p>※ <u>운용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- <u>운용조직 명 : Equity Investment Team</u></p> <p>- <u>운용조직 역할 : Equity Investment Team</u></p> <p><u>Team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/u></p>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 <p>4. 제 1 호 <u>및 제 2 호</u>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4. 제1호 <u>내지 제3호</u>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을 말함.

주2)
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을 말함.

주3)
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을 말함.

주4)

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을 말함.

5)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
- 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

클래스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C-w	- 랩어카운트용 <신설>	- 랩어카운트용 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

6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 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 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 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 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

	<p>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5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7. 종류I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-e, C1, C2, C3, C4, C5, I] 90 일미만: <u>이익금의 70%</u>	해당사항 없음

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< 투자비용 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(%)	변경 후(%)

	등급	등급		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1	1	<u>44.99</u>	<u>49.63</u>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5</u>	<u>5.06</u>	<u>3.97</u>
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	6	6	<u>0.06</u>	<u>0.11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37</u>	<u>20.83</u>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21</u>	<u>22.86</u>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57</u>	<u>4.16</u>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57</u>	<u>4.16</u>
미래에셋베트남&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61</u>	<u>19.69</u>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7.76</u>	<u>26.05</u>
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49</u>	<u>21.99</u>
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46</u>	<u>6.38</u>
미래에셋이머징달리회사채증권투자신탁1호(UH)(채권)	4	4	<u>7.78</u>	<u>8.15</u>
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84</u>	<u>21.65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	2	2	<u>24.38</u>	<u>23.21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2	2	<u>22.47</u>	<u>22.13</u>
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<u>32.31</u>	<u>28.15</u>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2	2	<u>21.08</u>	<u>23.81</u>
미래에셋코친디아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44</u>	<u>18.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22</u>	<u>22.8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57</u>	<u>4.16</u>
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9.98</u>	<u>27.08</u>

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10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

	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통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u>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통화증권	<삭제>

	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11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</u>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<u>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